

《2023. 9월 2차》
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
경조사 통지 제한



관련 내용

○ 도입배경

-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한 직무관련자·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부당·편법적 금품수수를 방지함으로써 직무공정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

○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

- 본인과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관련되는 결혼, 사망

○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

- 직무관련자·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자
- 친족, 전·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(직무 관련 유무 불문)
-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의 회원

○ 경조사 통지 방법

- 직무관련자·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: 통지방법상 제한 없음
-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·방송에 의한 통지
(다만, 보건·의료·세무·건설 등 특정 분야 공무원과 관계되는 매체는 제외)
- 현재 또는 과거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해당기관 내부통신망 게시
(직무 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)
- * 내부통신망 : 내부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(인트라넷, 내부메세지 등)

부적절 사례

- 구청 과장의 자녀 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문자로 통지
- 상급자의 모친상을 직무관련단체인 관내 모든 건축사들에게 문자로 통지
-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관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배포
- 구청장이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, 본인 자녀 청첩장을 대표들에게 전달

부조리 신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